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227호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3. 11. 15.

#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227호
----------	-------

제출연월일 : 2023. 11. 15.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촌활력과장

## 1. 제안이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충청남도 3농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농정거버넌스를 통해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여 농정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남 시군마다 설치운영해왔으나, 민선8기 취임 후 위원회가 폐지(2023.3.10.) 되어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져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14. ~ 10. 4.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6) 충청남도소관실과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041-635-4012)

## □ 폐지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농촌활력과장 오운석
안	농업정책팀장 이영주
자	담당자 김세찬 (746-6052)

## 참고 1

##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9.10 조례 제982호  
(일부개정) 2021.06.10 조례 제1477호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09.13 조례 제1603호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농어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3농혁신의 다양한 시책 개발과 실천 계획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농”이란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말한다.
2. “3농혁신”이란 농어촌 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잘사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3농혁신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3농혁신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3. 3농혁신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3농혁신의 주요 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문화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22.9.13.>

2. 위촉직 위원

가. 논산시의회 의원

나.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의 임원

다. 농협은행 논산시지부·관내 지역농업협동조합·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논산계룡산림조합의 전무급 이상 직원

라. 외부전문가

마. 분야별 협의체장

바.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분야별 협의체)**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협의체를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협의체는 농정분야, 축산자원분야, 산림공원분야, 희망마을건설분야, 농업기술분야를 두며 각 분야별 협의체의 위원수는 7명 이하로 한다.

③ 각 분야별 협의체장은 해당 분야별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야별 협의체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별 사안에 대하여 분야별 협의체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공무원 등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조례 제982호, 201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중“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㉘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행복도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